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공고 제2026-5호

2026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제2차 지원계획 공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4조에 근거하여, 2026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7일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지역산업 및 제조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의 맞춤형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역량 강화

□ **예산규모 : 21.69억원**

□ **사업기간 :** 선정 후 ~ '26. 9월말

□ **관리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 **사업내용** : 제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급기업이 제공하는 분야별 서비스(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제공 (기업별 정부지원금 50백만원 이내)

* 메뉴판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포인트(정부지원금+기업분담금)

□ 추진절차

신청・접수		평가・선정		협약체결		바우처발급
혁신바우처플랫폼 www.mssmiv.com	⇨	평가 및 최종 지역별위원회	⇨	관리기관·선정기업 (기업분담금 납부)	⇨	공급기업 매칭 및 사업수행
'26년 2월~		'26년 3~4월		'26년 4월 ~		'26년 4월 ~

□ **신청대상** : '지역특화프로젝트연계형(레전드50+ 참여기업 전용)바우처' 및 '지역자율형바우처', '지역소공인성장형(소상공인 지원사업 참여기업 전용) 바우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대구·경북 소재기업(사업별 지원대상 및 내용(4p~) 참고)

※ 지역별 지원 대상 및 내용이 다를 수 있음(지역별 공고 확인 필요)

신청 제외 대상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다만,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또는 대표자

◈ 휴·폐업 기업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운영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신청한 분야에 대하여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의 공급기업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신청 프로그램의 내용이 동 사업 및 타부처 정부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내용과 유사·중복되는 경우

◈ 신청일 현재 '26년 동사업에 선정된 기업(재기바우처 선정기업은 신청 가능)

◈ 혁신바우처 사업을 총 5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신청기간** : ’26. 2. 27.(금) ~ ’26. 3. 13.(금)

ㅇ **(접수마감)** 접수 마감일 18시까지 온라인 시스템(혁신바우처플랫폼)에 신청서 제출을 완료해야 하며, 이후 추가 접수 불가

- 접수 마감일인 3월 13일(금)은 사업자번호 끝자리(짝수, 홀수)로 신청서 제출 시간을 구분하여 제출*

* 신청서 제출(3.13(금)) : 끝자리 홀수(09:00~14:00) / 끝자리 짝수(14:00~18:00)

□ **신청방법** : 혁신바우처플랫폼(http://www.mssmiv.com) 에서 신청

ㅇ 회원가입 및 사업 신청* 시 사업자 명의 공동인증서와 대표자 개인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모두 필요

* 본 사업 수행 사업장 기준으로 신청

ㅇ 동일 사업연도 내 동 사업 1회 참여 가능

□ **신청시 유의사항**

ㅇ 아래 유의사항을 확인 후 사업 신청 필요

신청 전 유의사항

◈ **선정 후 바우처 협약* 포기 시 차년도 사업 신청 불가**

*** 바우처 협약**(중진공-수요기업) : **사업 선정 후 30일 이내** 협약체결 및 자부담 납부완료

◈ **선정된 수요기업이 정해진 기간 내에 서비스 계약완료*를 하지 않을 경우 선정 취소 및 차년도 신청 불가 처리될 수 있음**

*** 서비스 계약**(운영기관-공급기업-수요기업) : **선정 후 50일 이내** 체결완료

◈ 신청 및 최종선정 기업은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목적 취지에 맞게 성실하게 참여

◈ 사업 완료 후 수요기업이 정산하지 않을 경우, 수요기업 부담으로 서비스 대금 지급

◈ 별지 프로그램별 세부지원 내용에 명시된 항목만 바우처 사용가능

◈ 타 정부지원사업(수출바우처, 해외지사화 등) 수행한 과업내용이 중복일 경우 신청불가

◈ 사업 신청 및 참여 중 참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부정행위가 발견될 경우 관리지침에 따라 참여 제한조치, 보조금 환수 및 정부 사업제재

2. 사업별 지원대상 및 내용

1 지역특화프로젝트연계형바우처(레전드50+ 프로젝트 참여기업 전용)

○ **(지원대상)** 지역특화프로젝트 레전드50+ 참여기업 가운데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대구 또는 경북 소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주업종이 제조업*인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한국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기준 적용
융복합 컨설팅의 경우 2개사 이상 협업체를 구성하여 주관기업이 사업 신청 및 추진

○ **(지원규모)** 약 15.6억원 내외

* 향후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내용)**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3가지 분야, 8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 분야별 1개 프로그램 내 2개 세부프로그램*까지 신청 가능

* 홈페이지 공지사항 내 〔별지〕 프로그램별 세부 지원내용 참고
** 융복합컨설팅 신청 시 협업승인 후 기술지원, 마케팅 분야 신청 가능

[분야별 세부 지원 프로그램]

분야	프로그램	서비스 지원내용	한도 (백만원)
컨설팅	경영기술 전략	- 경영전략, 기술사업화 전략, 생산관리, 노무관리, 회계관리, 융복합, 가업승계 등	15
	AX·DX 컨설팅	- 스마트공장 진단 및 AX·DX실용화·활성화·고도화를 위한 전략 수립	50
기술 지원	시제품 제작	- CAD설계, 목업, 시제금형, 공정최적화, 시험생산 등	30
	시스템 및 시설구축	- 연구시설 구축, 스마트 공장 구축, 정보유출방지 시스템 구축	20
	IP기반 기술사업화	- 지식재산권(IP) 획득 지원 - 기술이전에 필요한 자문비 및 수행대행비 지원	15
	인증·연구장비 활용시험	-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보안해킹, 웹/앱) 등 시험·인증·연구장비활용 - 제품 또는 품질 관련 국내인증 및 국외인증 취득 등	15
마케팅	디자인 및 브랜드 지원	- 제품 디자인, 포장디자인, BI 및 CI디자인 등	20
	홍보 및 광고 지원	- 기업·제품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카달로그, 홍보영상, 홈페이지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제품홍보	20

* 서비스 지원내용은 기업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세부 지원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 프로그램별 세부지원 내용은 혁신바우처플랫폼(mssmiv.com)에서 확인 가능
*** 한도는 정부지원금 기준 신청·지원한도를 의미하며 최대 50백만원

○ **(바우처 이용절차)** 선정기업은 ① 바우처 협약 → ② 바우처 발급 → ③ 서비스 계약 → ④ 사업수행 → ⑤ 사업비 정산하여 서비스 지원 완료

* 바우처 서비스의 부가가치세는 수요기업이 별도 부담(사업비 정산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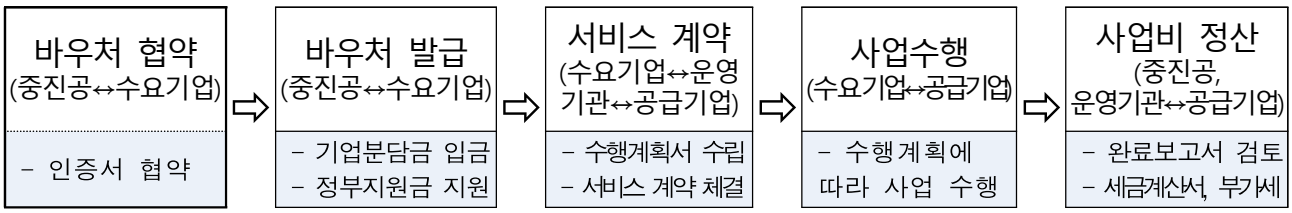

○ **(보조율)** 평균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 (40 ~ 85%)

평균 매출액	정부지원 비율	자기부담 비율
3억원 이하	85%	15%
3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75%	25%
1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65%	35%
50억원 초과 ~ 140억원 이하	45%	55%
140억 초과 ~ 1,800억원 이하	40%	60%

* 지역에 따라 5~15% 정부지원금 비율 추가 적용(23P. [별첨6] 지방기업 우대 분류표 참고)

○ **(바우처 사용기간)** ’26년 9월말까지 최종결과물 제출 **※ 사용기간 엄수**

○ **(신청서류)**

연번	구분	서류명	내용
①	필수	사업 신청서	온라인 작성
②		신용정보조회 및 정보제공동의서	온라인 동의서 체크 및 인증
③		사업계획서	[별첨1] 서식 활용하여 상세히 기술
④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기업 및 대표자
⑤		최근 3개년 재무제표증명원	국세청 확인본
⑥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청 확인본
⑦	해당 시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재무제표 미제출 업체

○ **(가점사항)** 서면평가 시 자동 반영, ❸항목의 경우 업로드 서류만 인정

가점 대상	부여 가점
❶ 원자재 수입 영향 높은 기업 ❷ 소공인 직접지구 ❸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단계 입주기업 ❹ 지역혁신공모사업 선정지역에 소재기업 ❺ 중소기업 챌린지진단 수진기업 ❻ 진로제시 컨설팅 처방기업 ❼ 특별·우대지역 소재 기업	각 1점, 최대 5점

* 서면평가 결과 동일점수 기업에 대한 순위 구분 시 가점 활용

○ **(서류 구비 시 유의사항)**

- **(①~②)** 신청서, 신용정보동의서 : 혁신바우처플랫폼(http://www.mssmiv.com) 내 온라인 신청 및 정보제공 동의서 확인

- **(③)** 사업계획서 : 사업 신청서 작성 시 혁신바우처플랫폼 업로드

- **(④~⑦)** 각종 민원증명자료는 **원클릭 서비스*** 활용 제출

* 원클릭 서비스의 사용 매뉴얼 및 링크주소는 혁신바우처플랫폼에(mssmiv.com) 공지되어 있으며, 민원증명자료는 해당 플랫폼으로만 제출

** ⑤ 표준재무제표 증빙자료 법인·개인('22년, '23년, '24년) 제출

○ **(평가절차)** 서면심사 → 지역별위원회 → 최종 선정

* 별도 현장평가 절차 없음

- **(서면심사)** 신청요건, 지원대상 여부 및 사업추진의 적정성 등 심사 후 고득점순으로 대상 선정

- **(지역별위원회)** 중기부, 중진공 및 외부전문가들로 구성하며,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분야별 최종 지원기업 선정

2 지역자율형바우처

○ **(지원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구 또는 경북 소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주업종이 제조업*인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한국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기준 적용
  융복합 컨설팅의 경우 2개사 이상 협업체를 구성하여 주관기업이 사업 신청 및 추진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기업(뿌리기업 확인서 보유 기업)

○ **(지원규모)** 약 3.22억원 내외

* 향후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내용)**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3가지 분야, 8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 분야별 1개 프로그램 내 2개 세부프로그램*까지 신청 가능

* 홈페이지 공지사항 내 〔별지〕 프로그램별 세부 지원내용 참고
** 융복합컨설팅 신청 시 협업승인 후 기술지원, 마케팅 분야 신청 가능

[분야별 세부 지원 프로그램]

분야	프로그램	서비스 지원내용	한도 (백만원)
컨설팅	경영기술 전략	- 경영전략, 기술사업화 전략, 생산관리, 노무관리, 회계관리, 융복합, 가업승계 등	15
	AX·DX 컨설팅	- 스마트공장 진단 및 AX·DX실용화·활성화·고도화를 위한 전략 수립	50
기술 지원	시제품 제작	- CAD설계, 목업, 시제금형, 공정최적화, 시험생산 등	30
	시스템 및 시설구축	- 연구시설 구축, 스마트 공장 구축, 정보유출방지 시스템 구축	20
	IP기반 기술사업화	- 지식재산권(IP) 획득 지원 - 기술이전에 필요한 자문비 및 수행대행비 지원	15
	인증·연구장비 활용시험	-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보안해킹, 웹/앱) 등 시험·인증·연구장비활용 - 제품 또는 품질 관련 국내인증 및 국외인증 취득 등	15
마케팅	디자인 및 브랜드 지원	- 제품 디자인, 포장디자인, BI 및 CI디자인 등	20
	홍보 및 광고 지원	- 기업·제품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카달로그, 홍보영상, 홈페이지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제품홍보	20

* 서비스 지원내용은 기업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세부 지원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 프로그램별 세부지원 내용은 혁신바우처플랫폼(mssmiv.com)에서 확인 가능
*** 한도는 정부지원금 기준 신청·지원한도를 의미하며 최대 50백만원

○ **(바우처 이용절차)** 선정기업은 ① 바우처 협약 → ② 바우처 발급 → ③ 서비스 계약 → ④ 사업수행 → ⑤ 사업비 정산하여 서비스 지원 완료

* 바우처 서비스의 부가가치세는 수요기업이 별도 부담(사업비 정산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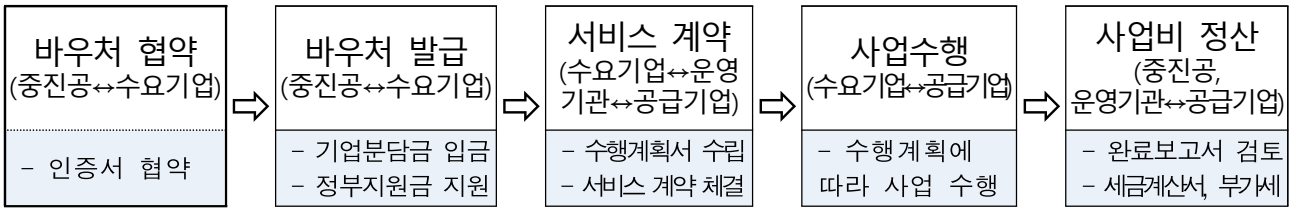

○ **(보조율)** 평균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 (40 ~ 85%)

평균 매출액	정부지원 비율	자기부담 비율
3억원 이하	85%	15%
3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75%	25%
1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65%	35%
50억원 초과 ~ 140억원 이하	45%	55%
140억 초과 ~ 1,800억원 이하	40%	60%

* 지역에 따라 5~15% 정부지원금 비율 추가 적용(23P. [별첨6] 지방기업 우대 분류표 참고)

○ **(바우처 사용기간)** ’26년 9월말까지 최종결과물 제출 **※ 사용기간 엄수**

○ **(신청서류)**

연번	구분	서류명	내용
①	필수	사업 신청서	온라인 작성
②		신용정보조회 및 정보제공동의서	온라인 동의서 체크 및 인증
③		사업계획서	[별첨1] 서식 활용하여 상세히 기술
④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기업 및 대표자
⑤		최근 3개년 재무제표증명원	국세청 확인본
⑥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청 확인본
⑦		뿌리기업 확인서	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확인서
⑧	해당 시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재무제표 미제출 업체
⑨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	**지방청 우대사항 가점**

○ **(가점사항)** 서면평가 시 자동 반영, ❸항목의 경우 업로드 서류만 인정

구분	가점 대상	부여 가점
공통	❶ 원자재 수입 영향 높은 기업 ❷ 소공인 직접지구 ❸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단계 입주기업 ❹ 지역혁신공모사업 선정지역에 소재기업 ❺ 중소기업 챌린지진단 수진기업 ❻ 진로제시 컨설팅 처방기업 ❼ 특별·우대지역 소재 기업	각 1점, 최대 5점
지방청	❶ 뿌리기술 전문기업	3점

* (공통) 서면평가 결과 동일점수 기업에 대한 순위 구분 시 가점 활용
(지방청) 서면평가 점수에 지방청 우대사항 가점 반영

○ **(서류 구비 시 유의사항)**

- **(①~②)** 신청서, 신용정보동의서 : 혁신바우처플랫폼(http://www.mssmiv.com) 내 온라인 신청 및 정보제공 동의서 확인

- **(③)** 사업계획서 : 사업 신청서 작성 시 혁신바우처플랫폼 업로드

- **(④~⑥, ⑧)** 각종 민원증명자료는 **원클릭 서비스*** 활용 제출

  * 원클릭 서비스의 사용 매뉴얼 및 링크주소는 혁신바우처플랫폼에(mssmiv.com) 공지되어 있으며, 민원증명자료는 해당 플랫폼으로만 제출

  ** ⑤ 표준재무제표 증빙자료 법인·개인('22년, '23년, '24년) 제출

- **(⑦)** 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확인서

- **(⑨)**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한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

○ **(평가절차)** 서면심사 → 진단·평가 → 지역별위원회 → 최종 선정

- **(서면심사)** 신청요건, 지원대상 여부 및 사업추진의 적정성 등 심사 후 고득점순으로 현장평가 대상 선정

- **(진단·평가)** AI진단 및 현장평가 실시

  * 서면심사 결과 상위기업의 경우 현장평가 생략 가능

- **(지역별위원회)** 중기부, 중진공 및 외부전문가들로 구성하며,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분야별 최종 지원기업 선정

3 지역소공인성장형바우처(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사업 참여기업 전용)

○ **(지원대상)**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사업 참여기업 가운데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대구 또는 경북 소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으로, 주업종이 제조업*인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한국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기준 적용

적용 대상 사업*
❶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LIPS Ⅰ) ('23~'25)
❷ 혁신소상공인 투자연계지원(LIPS Ⅱ) ('25)
❸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및 로컬브랜드 창출 ('23~'25)
❹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22~'25)
❺ 신사업창업사관학교 ('15~'25)
* 해당연도의 대상 사업 중 사업 구분 없이 1개 이상을 수행한 경우 지원 가능

○ **(지원규모)** 약 2.87억원 내외

  * 향후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내용)**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3가지 분야, 8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 분야별 1개 프로그램 내 2개 세부프로그램*까지 신청 가능

  * 홈페이지 공지사항 내 〔별지〕 프로그램별 세부 지원내용 참고

[분야별 세부 지원 프로그램]

분야	프로그램	서비스 지원내용	한도 (백만원)
컨설팅	경영기술 전략	- 경영전략, 기술사업화 전략, 생산관리, 노무관리, 회계관리, 융복합, 가업승계 등	15
	AX·DX 컨설팅	- 스마트공장 진단 및 AX·DX실용화·활성화·고도화를 위한 전략 수립	50
기술 지원	시제품 제작	- CAD설계, 목업, 시제금형, 공정최적화, 시험생산 등	30
	시스템 및 시설구축	- 연구시설 구축, 스마트 공장 구축, 정보유출방지 시스템 구축	20
	IP기반 기술사업화	- 지식재산권(IP) 획득 지원 - 기술이전에 필요한 자문비 및 수행대행비 지원	15
	인증·연구장비 활용시험	-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보안해킹, 웹/앱) 등 시험·인증·연구장비활용 - 제품 또는 품질 관련 국내인증 및 국외인증 취득 등	15
마케팅	디자인 및 브랜드 지원	- 제품 디자인, 포장디자인, BI 및 CI디자인 등	20
	홍보 및 광고 지원	- 기업·제품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카달로그, 홍보영상, 홈페이지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제품홍보	20

* 서비스 지원내용은 기업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세부 지원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 프로그램별 세부지원 내용은 혁신바우처플랫폼(mssmiv.com)에서 확인 가능
*** 한도는 정부지원금 기준 신청·지원한도를 의미하며 최대 50백만원

○ **(바우처 이용절차)** 선정기업은 ① 바우처 협약 → ② 바우처 발급 → ③ 서비스 계약 → ④ 사업수행 → ⑤ 사업비 정산 후 서비스 지원 완료

* 바우처 서비스의 부가가치세는 수요기업이 별도 부담(사업비 정산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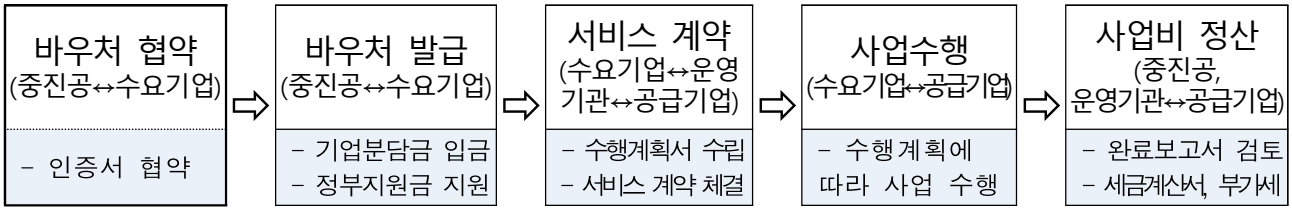

○ **(보조율)** 평균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 (45 ~ 85%)

평균 매출액	정부지원 비율	자기부담 비율
3억원 이하	85%	15%
3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75%	25%
1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65%	35%
50억원 초과 ~ 140억원 이하	45%	55%

* 지역에 따라 5~15% 정부지원금 비율 추가 적용(23P. [별첨6] 지방기업 우대 분류표 참고)

○ **(바우처 사용기간)** '26년 9월말까지 최종결과물 제출 **※ 사용기간 엄수**

○ **(신청서류)**

연번	구분	서류명	내용
①	필수	사업 신청서	온라인 작성
②		신용정보조회 및 정보제공동의서	온라인 동의서 체크 및 인증
③		사업계획서	[별첨1] 서식 활용하여 상세히 기술
④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기업 및 대표자
⑤		최근 3개년 재무제표증명원	국세청 확인본
⑥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청 확인본
⑦	해당 시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재무제표 미제출 업체

○ **(가점사항)** 서면평가 시 자동 반영, ❸항목의 경우 업로드 서류만 인정

가점 대상	부여 가점
❶ 원자재 수입 영향 높은 기업 ❷ 소공인 직접지구 ❸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단계 입주기업 ❹ 지역혁신공모사업 선정지역에 소재기업 ❺ 중소기업 챌린지진단 수진기업 ❻ 진로제시 컨설팅 처방기업 ❼ 특별·우대지역 소재 기업	각 1점, 최대 5점

* 서면평가 결과 동일점수 기업에 대한 순위 구분 시 가점 활용

○ **(서류 구비 시 유의사항)**

- **(①~②)** 신청서, 신용정보동의서 : 혁신바우처플랫폼(http://www.mssmiv.com) 내 온라인 신청 및 정보제공 동의서 확인

- **(③)** 사업계획서 : 사업 신청서 작성 시 혁신바우처플랫폼 업로드

- **(④~⑦)** 각종 민원증명자료는 **원클릭 서비스*** 활용 제출

  * 원클릭 서비스의 사용 매뉴얼 및 링크주소는 혁신바우처플랫폼에(mssmiv.com) 공지되어 있으며, 민원증명자료는 해당 플랫폼으로만 제출

** ⑤ 표준재무제표 증빙자료 법인·개인('22년, '23년, '24년) 제출

○ **(평가절차)** 서면심사 → 진단·평가 → 지역별위원회 → 최종 선정

- **(서면심사)** 신청요건, 지원대상 여부 및 사업추진의 적정성 등 심사 후 고득점순으로 현장평가 대상 선정

- **(진단·평가)** AI진단 및 현장평가 실시

  * 서면심사 결과 상위기업의 경우 현장평가 생략 가능

- **(지역별위원회)** 중기부, 중진공 및 외부전문가들로 구성하며,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분야별 최종 지원기업 선정

3. 문 의 처

구분	전화
지역특화프로젝트연계형, 지역자율형	1357 (055-751-9523, 9851, 9254)
지역소공인성장형	042-363-7734
중소기업 지원플랫폼(민원증명서류)	02-3771-1050

* [별첨5] 중진공 지역본·지부 소재지 및 연락처 참조

별 첨1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사업 신청 서식

【서식 1】 사업 계획서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계획서[일반 등]

1 기업 개요

업체명		대표자명	
책임자명		직 위	
휴대전화		이메일	
기업 소개	*주요 연혁, 생산품, 판매처 등*		

2 바우처 활용 계획

컨설팅	■ *과제명 : (ex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원가분석 컨설팅)* ■ *세부 활용 계획 : (과제내용, 일정, 목표 등)*
기술지원	■ *과제명 : (ex 모니터 전력 효율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 *세부 활용 계획 : (과제내용, 일정, 목표 등)*
마케팅	■ *과제명 : (ex SNS, 비대면 홍보를 위한 홍보 동영상 제작)* ■ *세부 활용 계획 : (과제내용, 일정, 목표 등)*

** 분야별로 구분하여 작성, 미신청 분야는 삭제 후 제출*

3 바우처 지원 필요성

기업활동에 바우처가 필요한 이유	*바우처 활용계획과 기업활동과의 관련성 및 도입 필요성*

【별지 1】 융복합 컨설팅 협업계획서('컨설팅'-경영기술전략 내 융복합 신청희망 기업)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사업[융복합컨설팅] 협업계획서

□ 협업체 기본정보[신청시, 주관기업이 전담작성]

구 분		기 업 명	대표자	설립연도	매출액(천원)**	생산품
협업체 구성	주관기업*					
	참여기업***					

* 동사업의 주체가 되어 신청, 평가, 협약·계약 및 정산 등 진행(모든 평가는 주관기업 대상 실시)

** 매출액은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표준재무제표 증빙자료 법인·개인('22년, '23년, '24년) 제출

*** 공급기업과 협업체 구성은 제한

□ 협업 추진체계

기 업 명	역할분담	협업비중(%)	융·복합 공동기술개발(제품) 설명
	예)생산		*제품사진* *상세설명*
	예)마케팅		
	예)디자인		

□ 공동협력방안

구 분	협 력 방 안			
제품개발 및 개선				
생산				
사업화				
협력모델	비즈니스모델	☐ B to B	☐ B to C	☐ B to G
	판로대상	국내		
		국외		

【서식 2】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 단계 입주기업 확인서 (해당시)

기관명	OO테크노파크 위기지원센터		
센터장 성명		담당자 성명	
담당자 이메일		담당자 연락처	

신청기업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담당자명		담당자 부서/직위	
담당자 이메일		담당자 연락처	*000-0000-0000*
주 소 (도로명 상세주소)	*(00000)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430*		
요청내용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가점 확인		

가점 검토의견	위 신청기업은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가점대상 기업임을 확인합니다.
확인서 유효기간	2026.00.00. ~ 2026.00.00.

2026년 0월 0일

ㅇㅇ테크노파크 위기지원센터장 ㅇㅇㅇ (서명 또는 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귀중

[참고] 지역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 소재지 및 연락처

○ 위기지원센터 확인서(서식3) 발급 관련 문의처

지역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강원	강원테크노파크	강원 춘천시 신북읍 신북로 61-10	033-248-5696
경남	경남테크노파크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18번길 22	055-259-3326
경북	경북테크노파크	경상북도 경산시 삼풍로 27	053-819-3055
광주	광주테크노파크	광주 북구 첨단 과기로 333	062-602-7217
대구	대구테크노파크	대구 동구 동대구로475	053-757-3704
대전	대전테크노파크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19	042-930-4881
부산	부산테크노파크	부산 강서구 과학산단1로60번길 31	051-320-3532
울산	울산테크노파크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15	052-219-8754
전남	전남테크노파크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율촌산단4로 13	061-729-2537
전북	전북테크노파크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반룡로 110-5	063-219-2132
충남	충남테크노파크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로 136	041-589-0162
충북	충북테크노파크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연구단지로 76	043-270-2232

* 서울, 경기, 인천, 세종, 제주는 위기지원센터 미설치지역으로, 가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됨

별 첨2 제조 소기업 규모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분류기호 “C”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평균매출액등 140억원 이하
2. 1차 금속 제조업	C24	
3.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4. 음료 제조업	C11	
5.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6.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7.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8.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담배 제조업	C12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7.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18.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19.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0.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1.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2.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3.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C31	
24. 기타 제품 제조업	C33	
25.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5억원 이하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위 표에도 불구하고,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은 지원 불가

별 첨3 제조 중기업 규모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분류기호 “C”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평균매출액등 1,800억원 이하
2. 1차 금속 제조업	C24	
3. 전기장비 제조업	C28	
4.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6. 가구 제조업	C32	
7.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0억원 이하
8.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9.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2.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3.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C31	
14. 담배 제조업	C12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15.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17.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8.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9. 기타 제품 제조업	C33	
20. 음료 제조업	C11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21.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2.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4.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5.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위 표에도 불구하고,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은 지원불가

별 첨4 평균 매출액 산정 기준

□ 평균 매출액 산정 방법

○ **법인 및 개인** : 평균매출액은 직전 사업연도 3년간('22년 ~ '24년 표준재무제표 기준)의 매출액 평균으로 산정

설립일자별 구분 (창업·합병·분할일)	평균 매출액 산정방법
'22년.1.1 이전 설립 기업	- '22년, '23년, '24년 매출액 합계를 3으로 나눈 금액
'22년 설립	- '23, '24년 매출액 합계를 2로 나눈 금액
'23년 설립	- '24년 매출액
'24.1月~'24.11月 설립	- '24년 매출액을 '24년 영업월수*로 나눈 후 12를 곱한 금액 * 영업월수 : 설립월의 다음달부터 설립연도의 12월까지의 개월 수
'24.12月 설립	- '24년 매출액을 설립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일수로 나눈 후 365를 곱한 금액
'25년 설립기업	- 평균 매출액 예상액 기입('25년 표준재무제표 발급 전)

☞ 매출액 산정 예시(개인)

○ 2022.3.14에 창업(합병, 분할)한 기업의 평균매출액을 산정하는 경우
- '22년, '23년, '24년 매출액의 합을 3로 나눈 금액을 평균매출액으로 함

○ 2024.3.14에 창업 또는 합병한 기업의 평균매출액을 산정하는 경우
- '24년 매출액을 9(4월~12월)로 나눈 후 12를 곱한 금액을 평균 매출액으로 함

○ 2024.12.14에 창업 또는 합병한 기업의 평균매출액을 산정하는 경우
- '24년 매출액을 12.14부터 12.31까지의 18일로 나누어 1일 평균 매출액을 구하고, 1일 평균매출액에 365를 곱하여 연간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평균 매출액으로 함

별 첨5 **중진공 소재지 및 관할구역**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소재지

지역본(지)부		주소	전화번호
서울인천	서울지역본부	서울 중구 무교로21(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5층	02-769-6423
	서울동부지부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558 월드타워빌딩 10층	02-2013-9851
	서울서부지부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81(가산동) 가산W센터 413호	02-2106-7412
	서울남부지부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16(서초동)한국벤처투자빌딩 101~102호	02-2023-4313
	인천지역본부	인천 연수구 갯벌로 12(송도동 7-50), 갯벌타워 14층	032-837-7031
	인천서부지부	인천 서구 봉수대로 806,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3층	032-560-2363
경기강원	경기지역본부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이의동) 경제과학진흥원 11층	031-260-4923
	경기동부지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 (야탑동) 코리아디자인센터 203호	031-760-9004
	경기서부지부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43(고잔동), 1층(신용보증기금 빌딩)	031-783-0617
	경기남부지부	경기 화성시 봉담읍 동화길 51 봉담원희캐슬 4층 431-434호	031-899-9115
	경기북부지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38(백석동) 일산테크노타운 관리동 102호	031-920-6736 031-920-6724
	강원지역본부	강원 춘천시 중앙로 54(중앙로2가) 우리은행빌딩 5층	033-269-6943
	강원영동지부	강원 강릉시 경강로 2110 동아빌딩 8층	033-649-9376
대전충청	대전지역본부	대전 서구 청사로 136(월평동) 대전무역회관 15층	042-281-3728
	세종지역본부	세종 한누리대로 320, 리치먼드시티 2층 (나성동)	044-860-8305
	충남지역본부	충남 천안시 북구 광장로 215 (불당동 1418)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4층	041-589-4587
	충북지역본부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가경동) 충청북도기업진흥원 4층	043-230-6834
	충북북부지부	충북 충주시 번영대로 200(연수동) 2층	043-841-3612
광주전라	광주지역본부	광주 서구 상무중앙로 84(치평동) 상무트윈스빌딩 6층	062-600-3066
	전북지역본부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76(효자동3가) 전주상공회의소 4층	063-210-9943
	전북서부지부	전북 군산시 대학로 331(나운동) 한화생명빌딩 4층	063-460-9812
	전남지역본부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2 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4층	061-280-8041
	전남동부지부	전남 순천시 장명로 18(장천동) 순천상공회의소 3층	061-729-1556
대구경북	대구지역본부	대구 북구 엑스코로 10(산격동) 대구전시컨벤션센터 4층	053-606-8433
	경북지역본부	경북 구미시 이계북로 7(임수동), 경상북도경제진흥원 5층	054-440-5915 054-440-5912
	경북동부지부	경북 포항시 남구 지곡로 394 (지곡동) 포항테크노파크 112호	054-288-7343
	경북남부지부	경북 경산시 삼풍로 27(삼풍동300) 경북테크노파크 본부동 501호	053-603-3321 053-603-3323
부산경남	부산지역본부	부산 진구 중앙대로639, 23층(엠디엠타워)	051-630-7414 051-630-7413
	부산동부지부	부산 해운대구 센텀동로 99(재송동) 벽산e-센텀클래스원 201~202호	051-745-5925
	울산지역본부	울산 남구 삼산로 274 (삼산동 1479-5) W-Center 14층	052-703-1123
	경남지역본부	경남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362 창원컨벤션센터 3층	055-270-9755 055-270-9769
	경남동부지부	경남 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로 80-16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4층	055-310-6625
	경남서부지부	경남 진주시 영천강로 167(충무공동) 이노휴먼씨티 3층	055-751-2903
제주	제주지역본부	제주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2동) 제주경제통상진흥원 3층	064-754-5157

□ 관할구역

중기부 지방청	중진공 지역본·지부	주 관할구역
서울	서울	중구,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마포구, 서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랑구
	서울동부	강동구, 광진구, 송파구
	서울서부	금천구, 양천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동작구, 영등포구
	서울남부	서초구, 강남구
인천	인천	연수구, 계양구, 남동구, 부평구
	인천서부	서구, 동구, 미추홀구, 중구, 강화군, 옹진군
경기	경기	수원시, 안성시, 용인시, 과천시, 안양시, 의왕시, 군포시
	경기동부	성남시, 광주시, 구리시, 남양주시, 이천시, 하남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경기서부	안산시, 시흥시, 광명시
	경기남부	화성시, 평택시, 오산시
	경기북부	고양시, 동두천시, 양주시,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연천군 , 김포시, 부천시
대전 세종	대전	대전시, 계룡시, 논산시, 금산군
	세종	세종시, 공주시, 청양군,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충남	충남	천안시, 서산시, 아산시, 당진시, 예산군, 태안군, 홍성군
충북	충북	청주시,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진천군, 증평군
	충북북부	충주시, 제천시, 괴산군, 단양군, 음성군
강원	강원	춘천시, 원주시, 양구군, 영월군, 인제군, 정선군, 철원군,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강원영동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태백시, 고성군, 양양군

중기부 지방청	중진공 지역본·지부	주 관할구역
전북	전북	**전주시**, 남원시, 무주군, 순창군, 완주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정읍시, 익산시, 김제시
	전북서부	**군산시**, 고창군, 부안군
광주·전남	광주	**광주시**, 나주시, 담양군, 영광군, 장성군, 함평군, 화순군
	전남	**무안군**, 목포시, 강진군, 신안군, 영암군, 완도군, 진도군, 해남군
	전남동부	**순천시**, 광양시, 여수시,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장흥군
	제주	**제주시**, 서귀포시
대구·경북	대구	**대구시**
	경북	**구미시**,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고령군, 봉화군, 성주군,예천군, 의성군, 칠곡군
	경북동부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영양군, 울릉군, 울진군, 청송군
	경북남부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울산	울산	**울산시**
부산	부산	**부산진구**, 강서구, 동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서구, 영도구, 중구
	부산동부	**해운대구**, 금정구, 남구, 동래구, 수영구, 연제구, 기장군
경남	경남	**창원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경남동부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경남서부	**진주시**, 거제시, 사천시, 통영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산청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

* : 중진공 지역본지부 소재 구역

별 첨6 지방기업 우대 분류표

구분	비수도권 (보조비율 +5%)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우대지원 지역 (보조비율 +10%)	특별지원 지역 (보조비율 +15%)
서울	-	-	-
부산	15개 자치구, 기장군		
대구	7개 자치구, 달성군	군위군	
인천		강화군, 웅진군	
광주	5개 자치구		
대전	5개 자치구		
울산	4개 자치구, 울주군		
세종	세종시		
경기		가평군, 연천군	
강원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원주시, 인제군, 춘천시	고성군, 삼척시,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횡성군	양구군, 화천군
충북	음성군, 증평군, 진천군, 청주시, 충주시	옥천군, 제천시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충남	계룡시, 당진시, 서산시, 아산시, 천안시, 홍성군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예산군, 태안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전북	군산시, 완주군, 익산시, 전주시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고창군,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전남	광양시, 나주시, 목포시, 무안군, 순천시, 여수시	담양군, 영광군, 영암군, 진도군, 화순군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신안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함평군, 해남군
경북	경산시, 경주시, 구미시, 김천시, 예천군, 칠곡군, 포항시	고령군, 문경시, 성주군,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봉화군, 상주시, 영덕군, 영양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	거제시, 김해시, 사천시, 양산시, 진주시, 창원시, 통영시	거창군, 밀양시, 산청군, 창녕군, 함안군	고성군, 남해군, 의령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
제주	서귀포시, 제주시		